

模範特許出願書이



金 允 培
(辨 理 士)

1. 特許出願書 作成要領

特許出願書는 발명자가 創案發明한 것을 국가에 대하여 獨占排他的인 특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종의 申請書인 바 이 신청서는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發明, 즉 特許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계승한 자가 適法하게 작성해야 한다.

出願書는 特許權設定登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의 記載 이하에 따라서 특허권의 權利範圍가 정해질 뿐더러 출원서와 그 부속서류 일체가 권리설정 의 근거가 된다.

特許出願書에는,

① 發明者의 주소 또는 營業所, 姓名, 住民登錄番號 및 國籍 등의 人的 事項

② 出願人의 人的 事項

③ 代理人을 통하여 出願節次를 밟는 경우에는 代理人의 人的 事項

④ 發明의 명칭

⑤ 外國人 出願의 경우에는 최초 出願國 및 自國에 있어서의 出願日字와 關係 事件番號

⑥ 優先權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出願人 또는 代理人이 記名捺印하도록 되어 있으며 出願書에 첨부해서 갖추어야 할 서류로서는,

① 出願書副本 1通

② 明細書正·副 各 1通

③ 圖面(도면이 있는 경우) 正·副 各 1通

④ 讓渡證(發明者와 出願人이 다른 경우)

⑤ 委任狀(代理人을 통하여 출원절차를 밟는 경우)

⑥ 法人登記簿謄本(출원인이 法人인 경우)

⑦ 國籍證明書(출원인이 外國人인 경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러한 서류 중 일부가 外國語로 기재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國語 번역문도 함께 첨부해야 된다.

2. 特許出願書類가 受理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출원서류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特許出願書를 작성할 때는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在外者가 국내에 거주하는 代理人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원절차를 밟는 경우

② 出願料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원절차를 밟은 경우

③ 1通의 출원서에 2件 이상의 출원절차를 밟은 경우

④ 출원서류를 국어로 기재하지 않거나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출원절차를 밟은 경우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그 承繼人임을 증명하는 書面(양도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원절차를 밟은 경우

⑥ 代理人이나 特許管理人이 委任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원절차를 밟은 경우

⑦ 法人이 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원절차를 밟은 경우

⑧ 출원절차를 밟은 서류가 方式(要式)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출원서류가 일단 수리되지 아니하면 출원인은 不備點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出願日은 최초의 書類提出日이 아니고 서류가 不受理된 후 다시 제출된 日字를 기준으로 하므로 出願書類가 수리되지 않으면 出願人에게 극히 불리한 것은 물론이다.

3. 特許明細書 作成要領

特許明細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① 發明의 名稱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히 표시하는 것으로 발명의 목적과 發明要旨를 요약할 수 있는 것이면 더욱 좋다. 또한 발명의 명칭은 自然科學에 관한 論文이나 著作物의 題號와도 같은 것이어야 하며, 이는 特許情報檢索時에는 索引語 등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이 취급하고자 하는 자연현상을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며 여기에 불필요한 形容詞 등 수식어를 붙여서는 안된다. 이를테면 「現代式」이나 「實用的」 또는 발명자의 이름 등을 띤 표현으로 사용해도 안된다.

② 圖面의 簡單한 說明

이는 첨부도면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것으로 化學的 方法에 관한 발명 등에서 그 說明에 圖面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 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圖面의 간단한 설명의 項에는 첨부된 도면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것이 어느 것을 표시한 도면인가를 간단히 기재하면 되는 바 이를 테면,

第1圖는 全體를 組立한 斜視圖

第2圖는 제1도 중 어느 부분의 斷面圖

第3圖는 分解圖

第4圖는 實施 狀態 參考圖

등으로 표시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항에서 符號 및 構造 등에 대한 설명은 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설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에서 한다.

③ 發明의 상세한 說明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發明의 目的·技術的 構成·作用效果 및 實施方法 또는 實施例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그 발명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技術的 知識을 가진 자면 그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되, 特許請求의 범위에 기재하는 내용은 명백히 표현·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 발명이 속한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기술적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의문이나 특허관계 法規나 判例 등에도 명시된 바가 없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審査業務를 담당하는 審査官이 갖추고 있는 정도의 기술적 지식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사항 중 發明의 目的의 欄에는 우선 발명의 概要를 기술하고 이 발명이 속한 분야에 있어서의 종래의 技術內容과 技術水準을 概述한 후 종래 기술의 결함이나 단점을 지적 기술하고 이 발명이 종래 기술의 어떠한 결함이나 未備點을 제거 시정코자 하는지, 즉 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나 산업상의 이용분야 또는 기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발명이 해결해 나가려는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이를 기재한다.

技術的 構成欄에는 발명의 목적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였는가를 기재하되 발명을 이루는 내용을 公知된 부분과 新規한 부분을 구분해서 기재하며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는 도면을 참고하여 構成을 說明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구성은 발명의 핵심인 바 발명의 구성란의 기재가 소홀하고 여기에서 特許請求의 범위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백히 설명하지 못하면 발명의 要旨가 불명확해 지므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란은 신중히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作用效果欄은 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부터 파생되는 效果發生을 기재하는 것으로 어떠한 구성에 의해서 어떠한 效果가 발생하는지 그 因果關係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발명에 의하여 발생한 특유의 효과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명의 구성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나타내는 實施方法 또는 각종의 實施例를 기재·설명할 수 있는데 이 실시예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안의 의의를 더욱 명백히 해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인 바 실시예는 이 발명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면 가급적 여러 종류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숫자에 기인한 사실도 기재한다.

④ 特許請求의 범위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그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만을 하나의 항으로 기재해야 하는 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서 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결정되므로 특허청구의 범위는 特許權의 權利範圍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가장 중요한 항이며 發明의 構成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項에 모아서 기재하는 것인 바 발명의 작용이나 효과 등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둘 이상의 발명이 相互關聯하여 이용상 發明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관련 발명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 청구의 범위의 기재도 위와 같은 單項制의 例外로서 관련된 각각의 발명의 구성상 필요한 사항을 항별로 기재할 수 있는 바 이는 우리 特許法이 多項制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4. 明細書 記載要領

특허명세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평이한 우리말로 평이하게 써야 하며 文字는 한글로 쓰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나 표현은 괄호 안에 漢字 또는 英文字 등을 써도 무방하다. 化學反應式 같은 것은 구태여 이를 우리말로 풀어 쓰지 않아도 될

은 물론이다.

또한 문자는 가로쓰기로 하되 먹물이나 잉크로 쓰든가 또는 타자해야 하며 연필이나 볼펜으로 써서는 안된다. 또한 靑寫眞으로 이에 가름할 수도 없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되 한글 맞춤법에 의한 구두점을 찍는다.

문장은 알기 쉽도록 표현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그 發明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技術用語를 사용하여 기재하되 다른 文獻에 기재된 것을 인용함으로써 明細書의 기재에 가름해서는 안된다.

技術用語는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學術用語를 사용하되 학술용어가 우리말로 적절히 표현된 것이 없으면 외국어의 音譯을 그대로 우리말로 적고 괄호 안에 原文을 적어서 이를 대신 표현할 수도 있다.

용어는 그것이 보통 사용되는 의미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용어는 그 발명에 관한 明細書 전체를 통하여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그 의미를 미리 정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5. 明細書 작성시의 留意事項

明細書 작성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의 범위 相互間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 아래서 기재작성되어야 하며 添付圖面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도 내용상 일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特許請求의 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그 첫머리에 사용되는 慣用文言, 이를테면 「本文에 상술한 바와 같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또한 명세서에 그 발명의 실시예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를 目的構成 및 효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거절되거나 特許無効事由가 되므로 명세서 작성시에는 이러한 사항의 漏落與否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